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66
----------	-------

발의연월일 : 2018. 2. 9.

발의자 : 송희경 · 정갑윤 · 김정재
박맹우 · 김경진 · 김종석
강석호 · 박성중 · 김용태
성일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상품을 소량으로 자주 주문하게 되면서 개별 물류기업이 물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나 조직을 모두 갖추기 어려워짐. 클라우드컴퓨팅을 통해 신축적으로 정보통신자원을 이용하여 물류시설·장비·정보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화주기업에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클라우드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물류기업의 물류공동화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클라우드컴퓨팅의 필요성이 커졌음에도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및 적용에 대한 권장 또는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물류기업이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한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 및 적용에 대한 권장 또는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물류공동화를 촉진하

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제57조제2항).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기업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이하 “클라우드컴퓨팅”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제1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7조제2항 중 “무선주파수인식”을 “클라우드컴퓨팅·무선주파수인식”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